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3월 19일, 윤준병의원 등 18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3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4.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12. 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 의원)

우리나라는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고, 지난 2020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여건에 맞춰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농어촌 빈집은 주변 지역의 위생·안전 등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위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를 위한 유인기제의 부족, 농촌 빈집 정비와 관련된 부처 및 법령의 다원화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바목, 같은 조 제12호 및 제12호의2 삭제 등).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09124호)에 신설하고 있는 조문 중 현재 「농어촌정비법」에 존재하는 조문의 정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① 빈집정비사업 내용만으로 이루어진 조문은 전체 삭제
-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빈집정비사 명시된 부분 또는 조문의 일부분에서 빈집을 언급한 부분은 해당부분 삭제,
- ③ 농어촌정비사업 관련 조문 중 빈집정비사업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개념상 빈집정비 사업을 포함한 부분은 「농어촌정비법」 조문은 그대로 두되 그 취지를 제정법으로 이관

- ☐ 개정안 심사과정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09124호)의 심사 경과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